

교원징계위원회규정

제정 2002. 3. 29

개정 2012. 3. 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청강학원정관 제56조 내지 제64조에 따른 청강문화산업대학교 교원의 징계를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설치한 교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징계위원회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정관에 특별히 정한 것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조직 및 관할 등) ①징계위원회는 7인(위원장 1인을 포함)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②징계위원회는 청강문화산업대학교의 교원(학교의 장은 제외한다)에 대한 징계사항을 관장하되, 그 위원은 교원 또는 학교법인(이하“법인”이라 한다)의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 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 선출 및 직무) ①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징계의결의 기한) ①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때에는 위원장은 7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 할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위원장은 호선으로 한다.

③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징계의결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징계의결 요구) ①이사장은 교원 중에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별지제1호 서식에 의한 교원 징계의결 요구서를 작성, 위원장에게 징계의결을 요구 할 수 있다.

②대학의 장은 대학교원에 대한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이사장에게 징계요청을 할 수 있다.

제7조(징계의결 요구 사유의 통지) 이사장은 본 규정 제6조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8조(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①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기 위하

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출석을 통지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별지 제3호 서식)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②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별지 제6호 서식)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제척사유)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10조(위원의 기피 등) ①징계대상자는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 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본 규정 제9조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수가 재적위원 수의 3분의 2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1조(징계의 종류) ①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②정직의 기간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③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④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제12조(경고 및 주의처분) 총장은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으로서 경고 및 주의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경고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교원에 대하여는 이사장에게 징계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고처분은 2년이 경과한 날에 시효가 소멸된 것으로 한다.

제13조(징계의결) ①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②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할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고 이를 이사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③이사장이 전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의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이사장은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별지 제5호 서식)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4조(징계의결시의 정상참작)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 근무 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15조(징계사유의 시효)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제16조(징계위원회의 간사 등) ①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간사와 서기는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당해기관 소속 직원 중에서 그 임명권자가 임명한다.

제17조(운영세칙) 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계류 또는 종결된 징계는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 (3)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청강법제 호

징 계 사 유 설 명 서

소 속	직 위	성 명
징 계 사 유		
<p style="text-align: center;">위 사실을 통보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40px;">20</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학교법인 청강학원 이사장 ①</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40px;">귀하</p>		

<별지 제3호 서식 >

교원징계위원회제 호

출석통지서

인적사항	성명	한글		소속	
		한자		직위	
	주소				
출석이유					
출석일시		년 월 일 시 분			
출석장소					
유의사항		1.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아래의 진술포기서를 즉시 제출할 것 2.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전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할 것 3.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 처리한다.			
사립학교법 제65조 및 정관 제60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div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 교원징계위원회위원장 (인) </div>					

------(절취선)-----

인적사항	성명	한글		소속	
		한자		직위	
	주소				
본인은 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div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 성명 (인) </div> 교원징계위원회위원장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청강법제 호

교원징계처분결정서

소 속	직 위	성 명
주 문		
이 유	별첨 징계의결서 사본과 같음	
<p style="text-align: center;">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학교법인 청강학원 이사장 ㉠</p> <p style="text-align: center;">귀 하</p>		
<p>참고 : 이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에는 사립학교법 제66조의2 제2항 및 교원지위향 상을위한특별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 내에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p>		

<별지 제6호 서식>

교원징계위원회제 호

관계인 출석요구서

인 적 사 항	소 속		직 위		성 명	
	주 소					
출 석 일 시						
출 석 장 소						
출 석 사 유						
<p>사립학교법 제65조 제2항에 의거 귀하의 의견을 듣고져 출석을 요구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청강학원 교원징계위원회위원장 ㉠</p> <p style="text-align: center;">귀하</p>						